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

의과대학 소재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2) 충청북도	건국대, 충북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 조선대
4)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 전북대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7) 강원특별자치도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